

직무관련 범죄행위자 고발 및 정보공개 지침

제정 : 2019. 4. 12

제1장 범죄행위의 고발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.) 임직원(퇴직자 포함)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및 부패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윤리경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고발대상) 법인소속 임직원(퇴직자 포함)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, 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」, 「공직자윤리법」,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자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

제3조(고발주체) ① 부서장과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(퇴직자 포함)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
제4조(고발기준) ① 원장 등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,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.

■ 직무관련 범죄행위자 고발 및 정보공개 지침

1. 뇌물수수·공금횡령·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- 가. 200만원이상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·유용(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)
 - 나. 100만원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
 - 다. 공금횡령·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 - 라.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금품·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
3.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
4. 범죄내용의 과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
6. 인사, 계약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
 - 나.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,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
 - 다. 재단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재단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
 - 라. 문서의 위조, 변조, 직인(인감)의 부정사용 또는 재단 명의를 도용한 경우
7. 그 밖에 범죄의 내용, 횡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조(고발시기 및 절차) ① 고발의시기는 범죄 및 부패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라 함은 범죄 및 부패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 자료에 의하여 범죄 및 부패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.

② 고발은 원장 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 및 부패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고발상황의 관리)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문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 및 부패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고발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)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장 정보의 공개

제8조(부패직원 제재현황 등의 공개)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(금품·향응수수 등) 징계처분결과를 법인 홈페이지 (외부적발에 의한 경우), 사내게시판(내부적발에 의한 경우)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징계양정기준
2. 감경제한 대상
3. 의무적 고발 대상
4. 징계현황 및 유형, 결과 (개인정보는 제외)

다만, 내부적발의 경우에도 형사고발 건은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- 직무관련 범죄행위자 고발 및 정보공개 지침

[별지 제1호서식]

고 발 장

1. 피고발인

- 성 명 :
- 주 소 :
- 근무처 :
- 생년월일 :

2. 피의건명 :

3. 피의사실

-
-
-

